



##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9. 8. 1
개정일	2021. 4.15
개정차수	1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강사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임용계획) 교무처장은 각 학부(과)장과 협의하여 신규 임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1. 4.15)

제 3조(임용전형) ① 임용은 공개임용과 특별임용으로 구분하며, 공개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원 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한다)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
3.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긴급히 임용이 필요할 경우
4.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 제 2 장 공 개 임 용

제 4조(임용공고) 강사의 신규임용 공고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한다.

제 5조(제출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신규임용 지원서 [별지 1]
2. 자기소개서
3. 강의계획서
4. 학위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5. 지원서 상의 경력증명서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 6조(심사기구) ① 강사의 신규임용 시 채용심사를 위하여 기초심사위원회 및 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기초심사위원회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해당 학부(과)별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 단, 신설학과 및 전임교원이 3명 미만인 학부(과)의 경우 유사 학부(과)의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양교과목의 경우 기초심사위원회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교양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 7조(심사위원회 제척·회피 등) 심사위원과 지원자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인 경우 제척·

회피하고, 지원자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 8조(심사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강사 자격기준 심사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과 임용분야의 전공적합성, 교육역량 심사

제 9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지 2], [별지 3]과 같다.

제10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초심사위원회에서 [별지 2] 강사 신규임용 기초심사 평가표에 따라 강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③ 강사 자격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전공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3] 강사 신규임용 전공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전공심사를 실시하여 각 지원자별 평균점수를 산정하고 임용예정자 순위를 정한다. 다만, 지원자의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 제 3 장 특 별 임 용

제11조(특별임용절차) ① 제3조 제2항의 특별임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부(과)는 [별지 4] 강사 특별임용 추천서에 소속 전임교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하고,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 제 4 장 기 타

제12조(심사결과 공개) 신규임용 지원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밀유지) 강사 신규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원은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4조(보칙)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 강사 신규임용 기초심사 평가표

초빙학과명	초빙분야	성명	생년월일

심사 항목	세부 심사 항목	심사결과
기초심사	- 자격 심사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단위 : 년)

연구교육 직명	학력 경력연수	대학졸업자 · 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 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강사		1	1	2	1	2	3

※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위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
위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
위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 강사 신규임용 전공심사 평가표

초빙학과명	초빙분야	성명	생년월일

심사 항목	배점	세부 심사 항목	심사점수	
전 공 심 사	① 학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취득(예정) (20점)</li> <li>- 석사취득(예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5차 이상(16점)</li> <li>- 학사취득 (14점)</li> <li>- 전문학사취득 (10점)</li> </ul>	
	② 교육경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경력 4년 이상 (10점)</li> <li>- 교육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7점)</li> <li>- 교육경력 2년 미만인 경우 (4점)</li> <li>※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경력만 인정</li> </ul>	
	③ 산업체경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경력 4년 이상 (10점)</li> <li>- 산업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7점)</li> <li>- 산업체경력 2년 미만인 경우 (4점)</li> </ul>	
	④ 전공적합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적합 (20점)</li> <li>-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적합 (15점)</li> <li>-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유사 (10점)</li> <li>-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유사 (5점)</li> </ul>	
	⑤ 강의계획서	2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li> <li>●교육목표에 부합되는 수업설계</li> <li>●효과적인 교수법 및 강의진행</li> <li>●평가방법의 적절성</li> </ul> </div> <div style="width: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우수 (20점)</li> <li>- 우수 (15점)</li> <li>- 보통 (10점)</li> <li>- 미흡 (5점)</li> </ul> </div> </div>	
	⑥ 자기소개서	2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li> <li>●표현능력 및 품성</li> <li>●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사명감</li> <li>●학과 발전 기여가능도</li> </ul> </div> <div style="width: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우수 (20점)</li> <li>- 우수 (15점)</li> <li>- 보통 (10점)</li> <li>- 미흡 (5점)</li> </ul> </div> </div>	
합계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4]

## 강사 특별임용 추천서

사진	성 명		연락처		휴대폰 : _____			
	생년월일		이메일		긴 급 : _____			
	주 소		_____ @ _____					
최종 학력 (전공)	학위명	대학명	학과명	전공	평균평점	학위취득일자	비고	
	전문학사				/ 4.5	0000-00-00		
	학 사				/ 4.5	0000-00-00		
	석 사				/ 4.5	0000-00-00		
현직	재직기간		기관명		부서명		직위	
	0000.00.00~현재							
	재직기간		근무년월	주당 시간	근무기관명	직명	담당과목	비고
	시작일	종료일						
교육 경력	0000-00-00	0000-00-00	0년 0개월					
	0000-00-00	0000-00-00	0년 0개월					
	0000-00-00	0000-00-00	0년 0개월					
	합 계		0년 0개월					
산업체 경력	재직기간		근무년월	근무기관명	직위	담당직무	비고	
	시작일	종료일						
	0000-00-00	0000-00-00	0년 0개월					
	0000-00-00	0000-00-00	0년 0개월					
담당 교과목	학 과		교과목명		담당시수	비고		

상기 인을 ○○○ 학(부)과 강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학위 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 각 1부  
추천서 상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_\_\_\_\_ 학부(과)장 \_\_\_\_\_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